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45

제출연월일 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·사기업체 및 공·사단체를 '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'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·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, 채용·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 또는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42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9제3항 전단 중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·제3항, 제30조,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31조의2, 제32조, 제33조의2, 제33조의3"을 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·제3항, 제30조,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31조의2, 제32조, 제33조,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법률 제2027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제7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2항, 제33조의3제2항 및 제37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통보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업지원 대상자 채용·우선고용의무 위반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5제2항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채용 의무나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우선고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행 제7조의9(취업지원) ① • ② (생 제7조의9(취업지원) ① • ② (현행 략) 과 같음)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 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 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----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제2항・제3항, 제30조, 제31조 제2항 • 제3항, 제30조, 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31조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31조의 2, 제32조, 제33조, 제33조의2, 2, 제32조, 제33조, 제33조의2부 제33조의3, 제34조, 제34조의2, 터 제33조의5까지-----제35조, 제35조의2, 제36조, 제37 조, 제37조의2, 제38조 및 제39 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「국가 -----. <후단 삭제>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2제4항 중 "제 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 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・2급・ 3급 · 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 을 판정받은 사람"은 "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" 로 본다. 법률 제20277호 고엽제후유의증 법률 제20277호 고엽제후유의증

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

법률 일부개정법률

- 제31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 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 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재 외국민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 료, 소득 · 재산에 관한 자료, 국 민연금 · 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 •보험에 관한 자료, 생계급여 • 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, 출입국 정보,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,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1. ~ 5. (생략)
 - 6. 제7조의9제3항에 따른 취업

 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

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

 사무

법률	일부개정	법률			
제313	조(자료의	제공	요청	등)	1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제7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2항 및 제37조 이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및 취업

 지원실시기관의 통보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

 6의2. ~ 11. (생략)
 6의2. ~ 11. (현행과 같음)

 ② ~ ④ (생략)
 ② ~ ④ (현행과 같음)